

第121回(臨時會)

#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財務建設委員會會議錄

第 1 號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2002年5月13日(月) 10時11分

場 所 財務建設委員會室

### 議事日程

1. 서울特別市鐘路區仲介業紛爭調停委員會運用條例廢地條例(案)
2. 2002年度서울特別市鐘路區區有財產管理計劃變更計劃(案)
3. 區議會 意見聽取的 件
4. 主要懸案 業務報告(建築課, 公園綠地課)
5. 서울特別市鐘路區停車場設置및 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6. 主要懸案 業務報告(土木課)

### 審査된案件

1. 서울特別市鐘路區仲介業紛爭調停委員會運用條例廢地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 2面
2. 2002年度서울特別市鐘路區區有財產管理計劃變更計劃(案)(鐘路區廳長 提出) ..... 2面
5. 서울特別市鐘路區停車場設置및 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安載弘議員 外 4人 發議) ..... 10面
6. 主要懸案 業務報告(土木課) ..... 10面
3. 區議會 意見聽取的 件(鐘路區廳長 提出) ..... 17面
4. 主要懸案 業務報告(建築課, 公園綠地課) ..... 17面

(10時11分 開議)

○委員長 安載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李炳滿 財務局長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약 보름만에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뵙게 돼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제3대 지방의회의 임기가 가까이 오면서 본 위원장의 임기도 얼마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이 협조해 주신 덕분에 위원장 직무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구민의 존엄성과 행정의 능률화의 확보 그리고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오셨으며,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에 주민참여 유도 및 주민에 대

한 충실한 봉사정신, 주민에 대한 행정책임 등을 보장하도록 함은 물론 주민과 의사소통을 중요하게 인식하여 인격적 관계 설정에 주도적 역할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20여 일 후면 지구촌의 축제인 2002 한·일 월드컵이 문화월드컵으로 거듭나게 되겠습니다. 이번 월드컵은 그야말로 우리 문화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종로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종로의 이미지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젊음의 거리 대학로에서의 젊음의 축제, 인사동의 2002 통일아리랑 축전, 인사동 전통문화축제 등의 다채로운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돼서 세계속의 종로를 알릴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도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중요한 안건들을 심사

하시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다 알차고 내실있는 위원회 활동으로 제3대 의회가 효율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金景良 議事擔當主任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議事擔當 金景良 議事擔當 金景良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2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2년 5월 1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도시계획(안) 결정 및 변경결정 의견청취의 건과 2002년 5월 7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종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및 200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2002년 5월 7일 의장으로부터 모두 회부되었으며, 2002년 5월 10일 安載弘 議員 外 4인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 소관부서인 도시관리국 건축과 및 공원녹지과의 주요 민원처리 현황과 건설교통국 토목과의 각종 공사 시행 및 시행 예정 의견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金景良 議事擔當主任!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안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 접수된 조례(안) 2건,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건, 의견청취의 건 1건, 업무보고 2개국을 소관국 별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特別市鐘路區仲介業紛爭調停委員會運營條例廢地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2. 2002年度 서울特別市 鐘路區 區有財産 管理計劃 變更計劃(案)(鐘路區廳長 提出)

(10時16分)

○委員長 安載弘 의사일정 제1항 서울特別市鐘路區仲介業紛爭調停委員會運營條例廢地條例(案), 의사일정 제2항 2002年度 서울特別市 鐘路區 區有財産 管理計劃 變更計劃(案)을 일괄 상정합니다. 李炳滿 財務局長!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李炳滿 財務局長 李炳滿입니다.

그 동안 구정발전과 구민 편의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오신 재무건설위원회 安載弘 委員長님과 委員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종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중개업에 관한 분쟁 등을 조정·처리할 목적으로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에 의거 1994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종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 조례 제246호를 제정, 운영되어 오다가 부동산중개업법이 2000년 1월 28일 개정되어 동법 제37조의 3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중개업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근거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재무건설위원회 安載弘 委員長님과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부동산중개업분야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종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서울特別市鐘路區仲介業紛爭調停委員會運營條例廢地條例(案)

(鐘路區廳長)

(이상 1건 附錄에 실음)

○委員長 安載弘 李炳滿 財務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蔣昭秀 專門委員!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蔣昭秀** 專門委員 蔣昭秀입니다. 2002년 5월 7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모법인 부동산중개업법이 2000년 1월 28일 개정되면서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근거규정을 삭제함에 따라서 폐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법에서 본 조정위원회 규정을 삭제한 입법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4년도에 소개영업법을 부동산중개업법으로 대체하면서 중개과정에서의 중개수수료 분쟁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중개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시다마는 조정위원회 결정사항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권고사항에 불과하여 중개 이용건수가 전국적으로 실적이 1건도 없는 유명무실한 위원회이므로 이를 폐지하고 대체수단으로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에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를 신설하여 실제적인 분쟁조정 기능을 갖추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러면 법 개정하는 전후 제도를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전 현행법 규정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기능과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은 법 제37조의3 2항 "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분쟁을 심사 조정한다" 이렇게 해서 조정기능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치근거는 7항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조례를 인정했습시다마는 이 사항이 금번 법 개정에서 전부 삭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분쟁조정 방법에서는 현행법에서는 법 제37조 4항, 5항에서 조정의 절차·처리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분쟁조정사항이 발생해서 일방이 신청하게 되면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항에 대해서 소속공무원이 실사 사실조사를 합니다. 사실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를 해서 의견진술을 받아 가지고 조정안을 만들어서 당사자에게 통보를 하게 되면 그것을 수용을 하든지 거부를 하든지 임의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의 전혀 법적인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위원회의 기능이 유명무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금번 법 개정에서는 법 제16조의 3을 새로이 신설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개업자에게 다음사항을 기재한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이래서 여기 3호에 보면 중개수수료에 대한 것을 약정을 하도록끔 해서 중개수수료분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개정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행 폐지대상 우리 구 조례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은 '94년 6월 25일날 제정이 되었고 전문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은 현재 7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임기는 3년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鄭泰淳議員님이 이 위원회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심의 신청건수는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새로이 신설된 중개계약 제도의 내용을 살펴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에서 나온 중개계약서 양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개 갑은 중개의뢰인이 되고 을은 계약당사자의 중개업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4항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는 아예 얼마를 주겠다고 약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현행 요율 범위 내에서 약정 가능한 사항이 유효한 것입니다. 다음 5항에 보면 과다징수한 수수료가 있을 경우에는 차액을 환급하도록 의무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모법이 삭제됨에 따른 폐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종전의 중개수수료 분쟁시에는 본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하거나 행정청에 고발해서 부당한 사항이 있을 시는 해당 중개업소에 행정처분만 구할 수 있었습시다마는 앞으로 법 개정 이후에는 업소의 행정처분과 동시에 과다징수 수수료도 환급까지 받을 수 있게 제도가 개선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載弘** 蔣昭秀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李炳滿 財務局長!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

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李炳滿** 財務局長 李炳滿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제120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던 안건으로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사업의 규모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된다는 安載弘 委員長님, 吳弼根 幹事님 그리고 모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판단으로 이번 제121회 임시회로 유보된 안건입니다. 먼저 종로문화체육센터 건립부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종로문화체육센터는 구민 체육활동 공간이 절대 부족한 서부지역 주민들에게 여가 및 체육활동 공간 제공을 위한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하여 매입하고자 하며, 매입 예정부지인 사직동 산 1-48 외 1필지는 면적이 3,826㎡이며, 관리청은 산림청과 국방부로서 도시계획상 공원용지이고 지목은 임야입니다. 부지매입에 따른 소요예산은 3억 7,500여 만원으로서 2001년도 본예산에 4억 3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2년도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구립운동장 부지매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립운동장 건립은 우리 구민의 숙원 사업으로서 체육 및 각종 행사장소로서의 다목적 기능을 수행함은 물론 우리 구민의 체력향상을 통한 건강증진에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매입하고자 합니다. 매입 예정부지는 구 해화초등학교 이전부지로서 위치 및 규모는 명륜1가 1-27 외 4필지로 토지는 14,710㎡이고, 건물은 교사 2동과 부속건물 등 10개동 6,138㎡로서 서울특별시교육감과 교육인적자원부 소유의 토지입니다. 부지매입에 따른 소요예산은 시설비 20억을 제외한 103억 7,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부지매입에 필요한 재원은 향후 문화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서울특별시 등 관계기관을 통하여 재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2002年度서울特別市鐘路區區有財産管理計劃變更計劃(案)**

(鐘路區廳長)

(이상 1건 附錄에 실음)

○**委員長 安載弘** 李炳滿 財務局長! 수고하셨습니다. 蔣昭秀 專門委員!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蔣昭秀** 專門委員 蔣昭秀입니다. 2002년 5월 7일자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경요청 배경입니다. 종로구의 숙원사업인 구립 종합운동장과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청내용은 공공시설부지의 취득을 위한 계획으로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건은 종로문화체육센터 부지로 사직동 산1-48번지의 1필지 총 1,158평, 추정가는 3억 7,400만원에 상당하는 토지를 매입코자 하는 내용이 되었고 두 번째는 다목적 구립운동장 부지를 조성키 위해서 명륜1가 1-27 외 토지 4필지, 건물 1건 해서 토지는 4,456평에 추정가 매입가는 103억 7,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 토지를 매입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립운동장 건립계획입니다. 사업추진 기간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건물매입비, 시설비 등 해서 123억 7,400만원이 되었고 시설내용은 운동장이 70m 가로, 세로 100m 운동장 조성과 부속시설로서 관리실, 주차장을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 부지매입을 위해서 그동안 추진해온 집행부의 활동사항을 살펴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 8일날 최초로 구립운동장 건립을 위해서 구청 자체 방침을 입안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 6

월 26일자로 토지매각협의를 하고 또 서울시에 대해서는 투자사업선정 및 교부금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 3월 13일 우리 구 자체 공유재산심의회 회부를 붙여서 의결이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로문화체육센터 건립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추진기간은 2003년도까지 잡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3억 7,600만원, 건축비 108억 1,600만원, 설계비 4억 800만원 해서 총 116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설규모는 지하2층, 지상3층 연면적 6,756㎡로서 동형 체육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 내용에는 체육관, 수영장, 소극장, 문화전시실, 주차장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위는 2000년 5월 10일 건립방침을 입안해서 2000년 5월 13일 토지매입 협의를 했습니다. 소관 관리청은 산림청하고 국방부인데 협의를 해서 2001년 3월 12일자로 소관 관리청으로부터 매각하겠다는 의사통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 4월 19일자로 사업비 지원을 서울시에다 건의를 해서 2002년 1월 23일 시보조금 21억 6,000만원을 교부하겠다는 결정통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 3월 15일자 우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회부된 결과 의결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부지매입을 위하여 사전에 소관 관리청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본 계획의 실효성은 충분히 인정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載弘 蔣昭秀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일괄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회의 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하는 委員 있음)

吳錦南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錦南委員** 吳錦南委員입니다. 종로구 증개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이 우리 구에 접수된 지가 몇월 며칠입니까? 서울시에서 우리 구로 접수

이관된 것이 몇월 며칠

**○財務局長 李炳滿** 부동산증개업법은 2000년 2월 28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바로 연결해서 폐지조례안을 제출하지 못한 것이 영이나 규칙의 개정이 뒤따르지 못해서 약 2년간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吳錦南委員** 신청 접수건은 전국적으로 해서 한 건도 없었다고 하지만 2002년 2월 28일날 폐지된 법령이 지금까지 구에서 잠자고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에 관심이 없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구립운동장과 서부체육문화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20회 임시회 때 여러 가지 여건이 안돼서 그때 부결이 되고 다시 상정이 되었습니다. 재무국장으로 취임하신 지가 몇 개월이나 됩니까?

**○財務局長 李炳滿** 약 두 달 됩니다.

**○吳錦南委員** 현안업무를 보고 받으실 때 서부체육센터나 구립운동장 관계는 상당히 큰 사안인데 지난번에 보고사항에 좀 미비점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미비점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 국장님 하실 얘기가 있으면 한마디 해주십시오.

**○財務局長 李炳滿** 저희 구유재산관리는 물론 전체적인 관리는 저희 재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청 지정은 각 과별로 지정되어 있고 필요한 토지를 구매할 때는 각 과에서 필요한 토지에 대한 명세라든지 구체적인 자료를 저희가 받아 가지고 본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주관과로부터 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받아서 의회에 제출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다시 자료를 받다보니까 두가지 자료에 의해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120회 때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겠다는 것을 정중히 사과드린 바 있습니다.

**○吳錦南委員** 그러면 사직동 산 1-48번지 공원 부지 임야 매각이 이번 임시회에 통과되면 언제쯤

계약이 체결되었습니까?

○**財務局長 李炳滿** 지금 저희는 관리계획변경(안)이 통과되면 상대방하고 해서 지금 예산까지 기 확보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바로 계약을 체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도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하반기초에 7·8월 정도면 계약 가능하지 않겠나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吳錦南委員** 이것은 이미 설명서를 쭉 볼 적에 사전에 관리청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財務局長 李炳滿** 협의는 되어 있는데 저희가 관리계획변경안을 통과시켜야 그쪽에서도 관리청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절차는 조금 시간이 소비가 될 것 같습니다.

○**吳錦南委員** 가능한 한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화초등학교 구립운동장 토지매입 관계는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될 계획입니까? 앞으로 추경에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財務局長 李炳滿** 예산 확보 방안은 이제 저희가 관리계획 변경이 되면 저희도 준비를 하겠습니까마는 지금 현재는 제안설명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나 또는 문화관광부, 체육진흥공단쪽에다 구체적으로 지금 가서 자료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저희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아직 확답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예산으로서 약 12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구비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국비나 시비 또는 체육진흥공단쪽에다 적극적으로 로비를 해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가 지금까지는 국비를 저희가 받아다 쓴다는 것이 어려웠고 그런 사례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나 사직동에 건립하는 구민문화체육센터 거기에 대해서 문화공보부에서 30억을 주는 것으로 저희하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가 저희 구에 있고 하기 때문에 운동장을 건립할 경우에는 물론 저희 구민들도 활용하겠습니다마는 중앙부처도

활용하기가 좋습니다. 중앙부처가 저희 관내에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설명을 드려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吳錦南委員** 말씀 중에 설로 문화관광부로부터 30억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얘기가 쪽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국장님이 그러한 말씀을 해주시니까 서부문화체육센터는 구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하고 오늘 임시회에 통과하고 바로 계약체결이 되면 추경에는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착공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래야 관광부로부터 해를 넘기지 않고 어떻게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이번 7월달에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경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그런 생각은 가지고 계십니까?

○**財務局長 李炳滿** 재원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저희가 현재 순세계잉여금을 결산검사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이 약 40억 정도 남은 예산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4월말로 결산을 해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170억인데 세출예산 계산할 때 130억을 했습니다. 40억 여유가 있어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추경에 편성할 재원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하는 과정에서 저희 구청의 추경 분야가 어느 분야가 얼마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감안해서 그때 주관 과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吳錦南委員**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서부체육센터는 지금 동이 선거 상으로는 2개 동이 합쳐졌습니다만 2개 동의 동사무소 주민들 약 9만 여명이 필요로 하는 가장 급선무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꼭 하셔서 착공에 들어가서 빨리 완성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앞장 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載弘** 吳錦南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다음은 金福同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福同委員** 金福同委員입니다. 財務局長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일전에도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구립운동장의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財務局長 李炳滿** 지금 財務局長 입장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료로서는 지금 현재 진입하고 있는 도로의 굴곡부분은 도시계획선이 그어져있는 상태이고 또 여기를 일방통행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명륜동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도로가 있고 뒷쪽으로 성곽도로 밑으로 해서 6m도로가 확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가지 방향이 다 활용이 된다 하면 운동장을 이용하는데 대해서는 크게 불편이 없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활한 통행을 위해서 별도로 진입로를 개설하는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金福同委員** 국장께서 일방통행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도 그곳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폭은 약 4m가 되는 곳도 있고 4m가 조금 넘는 곳도 있고 그런데 일방통행의 경우로 본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대형차는 들어갈 수 없겠지만 승용차는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확인하셨죠?

○**財務局長 李炳滿** 네

○**金福同委員** 그 다음 우리 운동장 부지나 사직동 부지가 공시지가에서 매입을 하게 됩니까? 현재 감정가의 매입입니까? 공시지가의 매입입니까?

○**財務局長 李炳滿** 현재 저희가 감정가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金福同委員** m<sup>2</sup>로 얼마라는 것이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財務局長 李炳滿** 별도로 자료를 저희가 평가한 게 있으니까 그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사직동은 m<sup>2</sup>당 3만 8,000원인데 혜화초등학교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金福同委員**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좋고 우리 지역에 이런 사업을 빨리 해야 되는데 약간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처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載弘** 金福同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다음은 吳弼根委員님! 질의하세요.

○**吳弼根委員** 吳弼根委員입니다. 국가의 큰 대사를 앞두고 재무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월드컵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구립운동장을 만드는데 호의적인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3대 의회에 들어와서 즐기치게 구정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종합예술 학교를 건립하고 그렇지 않으면 종합 특수학교를 만들어서 떠나가는 종로에서 돌아오는 종로를 만들자고 이렇게 구정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것이 관철이 되지 않았습시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구에서 구민의 생활체육을 위해서 그리고 다목적 운동장으로 쓰기 위해서 구립운동장을 만들겠다 하는 좋은 아이디어를 내준 데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현장을 가보셨습니까?

○**財務局長 李炳滿** 가봤습니다.

○**吳弼根委員** 입지조건은 어떻다고 봅니까?

○**財務局長 李炳滿** 제가 각 구에 있는 구립운동장을 많이 가본 건 아닙니다만 전에 생활체육 업무를 담당했을 때 강서나 몇 군데를 가봤습니다. 지금 혜화초등학교 정도의 위치라 하면 서울 어느 구립운동장 보다 위치가 뒤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뒤에는 와룡공원이 있고 바로 인근에 실내체육관인 구민생활관이 있기 때문에 위치상으로는 최적의 위치라고 판단합니다.

○**吳弼根委員** 본 위원도 국장님과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 지리에 대해서, 金福同委員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제가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 지리를 훤히 알고 있습니다. 좋은 답변을 해주셨어요. 도시계획에 접한 구역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을 하면 되고 행사가 있을 때에는 일방통행으로 하면 빠져나갈

길이 세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소상히 잘 알고 있어서 고맙게 생각을 하구요 예산확보 문제가 상당히 걸림돌인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서서는 막연하게 문화관광부나 구민체육진흥공단, 서울시에서 재원을 확보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로는 우리 종로구가 비과세지역이 66.6%나 됩니다. 비과세지역이 99만㎡나 되고 건물 818개 동이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세입재원이 한 350 정도가 타구에 비해서 감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구청장님 늘 우리 종로구에서 홍보를 할 때 서울시에서 예산을 얼마나 따왔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실은 타구에 비하면 많이 따온 것이 아닙니다. 그 예산이. 정말 거기 알파해서 350억 정도는 더 우리가 세입을 못 가져온 그 예산은 따와야 한다. 그걸 프러스 해서 가져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재무건설위원장으로 계시는 安載弘委員長께서 서울시 입성을 하게 된다면 이런 문제를 충분히 감안해서 재원확보에 많은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가 알고로는 서울시에서 1구 1잔디구장 건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것을 활용하신다면 재원확보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吳鎭南委員長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훌륭한 일들이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빨리 추진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지요?

○**財務局長 李炳滿** 네. 저희 집행부에서도 다른 거는 모르더라도 최대한 구민행사를 할 수 있는 운동장은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계속 노력을 해왔는데 아무튼 이런 좋은 위치 장소가 나타나게 돼서 저희도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시설을 기어이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해주시고 지원해주시면 좋은 시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吳鎭根委員**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載弘** 吳鎭根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다음은 丁炳煥委員님! 질의하십시오.

○**丁炳煥委員** 丁炳煥委員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저도 동감하는 것도 있고 또 일부 달리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난번 120회 때 이 안건이 상정됐다가 보류되어 가지고 오늘 이렇게 또 이 안건이 올라온 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財務局長 李炳滿**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관 과하고 재무국하고 자료를 소집해서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이 제일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20회 때 보류된 원인이.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그때 말씀드렸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丁炳煥委員**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요. 그리고 같은 종로에서도 동부지역, 서부지역 이렇게 나눠 가지고 동부지역에는 문화센터가 공간이 좀 많아서 동부지역은 혜택을 좀 많이 보고 있고 서부쪽에는 이런 문화공간이 없어 가지고 문화공간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이 산림청과 국방부 땅으로써 공원용지인데 우리가 건립하는 데에는 공원용지로서의 제약은 받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財務局長 李炳滿** 공원용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상정해서 저희가 체육시설을 하겠다는 것을 이미 상정해놓은 상태입니다.

○**丁炳煥委員** 상정해서 아직까지 공원용지를 풀어서 즉 말하자면 체육센터를 건립하는데 이상 없다는 답은 아직 안왔죠?

○**財務局長 李炳滿** 그래서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지금 현재는 고시단계입니다. 그래서 고시만 하게되면 다 끝나게 됩니다.

○**丁炳煥委員** 서부문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2000년도 5월부터 추진해 가지고 2001년 3월달에 산림청이나 국방부에서 토지를 매각한다는 통보를 받았지요? 그런데 2001년도 본예산에서는 4억 3,7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2002년도에는 이것을 왜 본예산에 상정을 안 시켰어요?

○**財務局長 李炳滿**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과에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주관과가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조례(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실무 담당장장이 나와서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여기에 오게 하겠습니다.

○**丁炳煥委員** 2002년도부터 2003년까지 건립한 계획을 했다면 약 건축비가 100억 예산이 들어가는데 2002년도에도 당연히 예산을 편성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반기 추경이라도 많은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財務局長 李炳滿** 지금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부지매입비로 사고이월된 게 4억이고 지금 서울시에서 21억이란 예산을 저희한테 배정해주겠다고, 이것은 확정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에는 우선 명칭으로 2억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필요하신 만큼 저희가 추가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이 부지매입비, 서울시의 우리 금년도 예산해서 27억이 확보된 상태이고 또 문화관광부하고 지금 담당국장하고 장관까지 만나 가지고 전에 계시던 鄭興鎭 廳長님하고 盧張鐸 副區廳長님이 직접 방문해서 30억은 저희한테 예산을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 57억 정도가 체육문화복지센터를 위해서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丁炳煥委員** 그리고 건축비가 약 108억 1,600만 원인데 설계비가 4억 800만원이네요. 여기 전문위원 보고사항에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설계비에 감리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리자가 없어도 이거는 건축할 수 있습니까?

○**財務局長 李炳滿** 감리까지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구체적인 설계가 안나온 상태

에서 개략적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되면 구체적인 설계에 의해서 나올 겁니다.

○**丁炳煥委員** 대략적인 설계가 100억이 든다면 설계비와 감리비가 포함된다면 설계비는 건축비의 몇%를 차지하고 감리비는 건축비의 몇%를 차지해서 대략적으로 4억 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財務局長 李炳滿**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주관과에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丁炳煥委員** 우리 국장님은 대략적인 것만 알고 구체적인 것은 모른다는 말씀입니까?

○**財務局長 李炳滿** 네

○**丁炳煥委員** 이걸 서면으로 건축비 100억에 대한 설계비와 감리비 포함해서 4억 800이니까 설계비는 건축비에 대해서 몇 %를 차지하고 있고 감리비는 몇%를 차지하는지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부문화센터는 빠른 시일 내에 건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丁炳煥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다음은 玄壽漢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玄壽漢委員** 玄壽漢委員입니다. 제가 지적과장님께 여쭙보겠습니다. 중개업자들 1년에 교육 몇 번 있습니까?

○**地籍課長 徐燦奎** 그건 부동산중개업협회에서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중개업협회에서 부동산업자에게 교육을 시키는데 사무실 개설하기 전에 일정기간 받아서 그걸 첨부해서 사무실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한번 받습니다.

○**玄壽漢委員** 1년에 공식적인 교육 일정은 없어요?

○**地籍課長 徐燦奎** 일정은 중개업협회에서 마련해서 받고 있습니다.

○**玄壽漢委員** 그러면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5,000만원에서 1억은 얼마, 1

억 이상은 얼마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地籍課長 徐燦奎 네. 있습니다.

○玄壽漢委員 그런데 중개업수수료 요율표가 각 중개업자 사무실마다 부착하게 되어 있지요?

○地籍課長 徐燦奎 부착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나눠드리고 찾아다니면서 확인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속할 때 부착이 안된 곳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玄壽漢委員 1년에 몇 번씩 해요?

○地籍課長 徐燦奎 상반기, 하반기, 이사철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玄壽漢委員 그런데 부착 안한 중개사무실은 얼마나 적발됐어요?

○地籍課長 徐燦奎 시정한 것이 10여건 있습니다.

○玄壽漢委員 거기에서 부착 안한 사람은 어떠한 행정 제재를 받습니까?

○地籍課長 徐燦奎 단순한 것들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玄壽漢委員 그러면 어떤 법적인 행정처분 중 제일 중한 게 뭐니까?

○地籍課長 徐燦奎 허가취소까지 하고 있습니다.

○玄壽漢委員 제가 여쭙보는 건 부동산중개업자들 사무실에 가보면 그 요율표를 붙인 걸 볼 수가 없어요. 그게 있으면 얼마짜리는 몇%다 하는 게 나오잖아요.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가는데 부동산업자나 매입자나 매각자나 이게 자꾸 마찰이 생기는데 요율표가 있어야 그것을 보고 주면 이상이 없잖아요. 잘 지키는 데는 없는 것 같아요.

○地籍課長 徐燦奎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표를 꼭 붙이도록 하고 또 큰 용지로 나눠드리고 했는데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玄壽漢委員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각 사무실마다 부착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착이 안됐을 때에는 행정적인 조치를 가해야 분쟁이 없는 거예요. 제가 자주 다녀보는데 우리 동네도 많이 들러봤습니다. 붙인 데가 전혀 없어요.

○地籍課長 徐燦奎 알겠습니다. 위원님 계시는 곳부터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저희 반회보에도 몇번 게재를 했고 종로사랑지에 했고 인터넷에도 올려놓고 있습니다.

○玄壽漢委員 반회보같은 데는 올리면 그건 그날 보고 버려지니까 그런데 중개업사무실에 가면 그거 붙인 데를 보면 구석배기에 자기네만 붙 수 있게 붙여놓고 일반인들이 와 가지고 봐서 얼마 주면 된다 이러면 소음이 없는데 조금 컸네 많이 컸네 그런 얘기가 자꾸 들리니까 이왕이면 지도단속을 하실 때 그걸 중점으로 해주십시오.

○地籍課長 徐燦奎 알겠습니다. 잘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玄壽漢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다음은 丁炳煥委員님! 질의하십시오.

○丁炳煥委員 丁炳煥委員입니다. 우리 玄壽漢委員님이 부동산 요율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어느 동이고 부동산업자들이 본업으로 생각하고 부동산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허가권자가 있고 종사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보면 대여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이 볼 때는 대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제 생각으로는 가령 딸 앞으로 허가가 되어 있는데 딸은 영똥한 데 있는데 어머니가 와서 대행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계약서 체결할 때에는 허가권자만 하게 되어 있죠?

○地籍課長 徐燦奎 그렇습니다.

○玄壽漢委員 그런데 실체는 그렇지 않은 데가 많아요.

○地籍課長 徐燦奎 그것도 집중단속 건 중의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도 단속해서 허가취소를 한 게 1건 있습니다. 그것도 집중단속을 하겠습니다.

○丁炳煥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載弘 丁炳煥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李炳滿 財務局長!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委員!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서울특별시종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07分 會議中止)

(11時17分 繼續開議)

○委員長 安載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特別市鐘路區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安載弘議員 外 4人 發議)

6. 主要懸案業務 報告의 件

○委員長 安載弘 의사일정 제5항 서울特別市鐘路區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의사일정 제6항 主要懸案業務 報告의 件을 상정합니다.

선배 동료 위원님께 위원장이 오늘 다룰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발의자로서 제안설명과 답변을 하게 됨으로 부득이 의사진행을 우리 吳弼根幹事로 하여금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吳弼根幹事! 나오셔서 의사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安載弘 委員長, 吳弼根 幹事와 司會交代)

○委員長代理 吳弼根 방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 안건에 대한 회의진행을 위원장을 대신하여 간사인 본 위원이 맡게 되었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安載弘議員!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安載弘議員 安載弘議員입니다. 국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본 개정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된 배경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의 차량 총 대수가 5만 5천 여 대를 상회하여 가구 당 1대 비율로 차량을 보유하게 되어서 이제 차량은 사치품이 아닌 일반 시민의 생활 필수품화되어 있고 차량 유지비용도 종전의 특별소비세 개념에서 일반 시민의 생활안정 비용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어서 차고 없는 일반 서민의 차량 유지 비용의 경감 차원에서 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 주차비용을 우선 경감하여 서민들의 가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의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 제1항의 별표1중 표 하단의 5급지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주민이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 “월 정기권은 40,000원으로 함”을 “월 정기권은 35,000원으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드린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서 차고 없는 일반 서민의 차량 유지비용이 경감되고 서민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종로구의회의 발전과 더불어 지방자치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서울特別市鐘路區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安載弘議員 外 4人)

(이상 1건 附錄에 실음)

○委員長代理 吳弼根 安載弘 委員長! 수고하셨습니다. 蔣昭秀 專門委員!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蔣昭秀 專門委員 蔣昭秀입니다. 2002년 5월 10일자 安載弘議員님 外 4인의 議員님들이 제출하신 서울특별시중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글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 중에서 주·야간 월정기권 요금을 40,000원에서 5,000원 인하해서 35,000원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 개정안을 현행 조례와 개정내용을 대비해서 표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른 것은 변함이 없고 참고 표시된 사항이 있습니다. 급지 밑에 현재 5급지에 5급지가 거주자우선주차구획입니다. 월정기권은 주간은 3만원, 야간은 2만원 해서 주·야간 할 경우에는 5만원이 됩니다. 마는 현재 4만원으로 해서 참고표시를 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35,000원으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참고로 하기 위해서 현재 각 동별 차량대수와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 사용면에 대한 현황을 살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평창동의 경우에는 지금 주차장사용신청률이 23.9% 그 다음에 부암동이 69.7%, 그 다음에 무악동이 81.5% 이렇게 해서 8개동만 신청률이 100%에 달하지 못하고 여타 동은 사용대수의 100%를 다 쓰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마지막에 화살표를 보시면 현재 신청총수가 2,829건 중에서 전일제를 신청하는 건수가 1,912건이고 야간만 신청하는 건수가 917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일제 1,912건 중에서 5,000원을 삭감하자는 그런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동별 시설주차장 현황으로서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

요금인하 구정질문에 대해서 2001년 12월 4일자 구청장의 답변요지입니다. 그래서 현 이 사항은 집행부의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참고하시기 위해서 해냈습니다. 답변자료는 주차요금은 주차구획을 관리할 수 있는 최소경비로 산출된 금액이며, 서울시내 전 구청 전 지역에서 통일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이므로 주차비 경감은 형평성 문제 관리비용 문제 등으로 해서 우리 구에만 독단적으로 시행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구청장이 답변한 바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주차요금을 인하하여 이용률을 제고시킴으로써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코자 하는 면과 지방의회가 주민의 가계생활안정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면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요금 인하로 월 1,000만원 정도의 약 정확히 해서는 995만원 정도가 재정의 주차수입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부담이 수반되어 집행부의 동의 절차가 수반되어야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규정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吳弼根 蔣昭秀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康亨宇 建設交通局長님! 나오셔서 주요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안녕하세요? 建設交通局長 康亨宇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安載弘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힘써 오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토목과의 주요업무 계획 및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照)

主要懸案 業務報告

(建設交通局)

(이상 1건 附錄에 실음)

○委員長代理 吳弼根 康亨宇 建設交通局長!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및 6항에 대한 일괄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金福同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金福同委員 조금 전에 安載弘 委員長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봤습니다.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보면 1등급에서 5등급이 있는데 1등급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어떤 곳이 1등급이고 어떤 곳이 5등급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1등급은 상업지나 구분이 되어 있는데 조례상에 표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기억을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金福同委員 그렇습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安載弘 議員님께서 발의하신 말씀대로 우리 종로구만 하고 있는 시행입니까? 아니면 다른 구도 유사한 것이 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安載弘 委員長님이 제시한 대로 그 부분은 서울시 기본으로 준칙 형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각 구청에서 각 조례로 이용을 하도록 이렇게 권한위임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安載弘 議員님이 그러한 구에 위임된 범위 내에서 5,000원을 조정하자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金福同委員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제 생각으로는 물론 우리가 선도적으로 5급지에 대해서 5,000원을 할인을 해주는 이러한 의도가 지금 전문위원이 제시한 것처럼 우리 의회활동의 이렇게 활발성과 주민의 여러 가지 가계 부담을 줄여준다는 측면은 옳겠지만 우리 구청의 입장이 서울시를 상급부서라고 생

각을 한다 하더라도 한 배를 타고 한 물결 속에서 움직여가야 하는데 돋보여 가지고 바깥으로 빠져나왔을 때 그것이 옳은 흐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 구청하고 관계되는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것이 어떤가 의안 제안하는 것은 계속 좋은 생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金福同委員 본 위원이 검토한 길로는 현재 5급지로 되어 있는 것은 거주자를 이용을 많이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주거지역이라고 하는 곳에는 사실 낮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지금 전문위원님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8개동은 신청 구획 범위를 넘어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金福同委員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뭐니까? 비싸서 그렇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그 이유까지 조사는 안해 봤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이제까지 저희들이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데 부암동이나 평창동 이러한 부분에 좀 지형적 여건이 도로상에 여유가 좀 많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주 이유가 될 것이고 나머지 동들은 점차 작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점차 아마 제가 볼 때는 신청차수가 주차면수를 곧 상회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金福同委員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저희 지역같은 경우는 아주 1급지입니다. 엄청나게 공간이 지금도 그럴 수만 있는 곳이면 어디든 그러서 본 위원은 해주고 싶은, 그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심정이고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은 뭐냐면 1급지하고 5급지가 있는데 주거지역이라든가 이러한 곳에는 조금 낮게 해주고 또한 1급지같은 데는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올리고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지금 동일한 생각입니다. 그것 때문에 작년 회의 때도 安載弘 議員님이 제안했을 때 굉장히 좀 그때 제안은 안 됐습니다마는 사전 검토사항으로서 그 부분이 굉장히 염려가 됐던 부분의 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金福同委員** 이러한 부위가 어느 5급지에는 35,000원으로 해주고 분포도를 보게 되면 주거환경이 주차장, 차를 댈 수 있는 곳이 없는 곳이 1급지에서 3급지라고 봅니다. 4급지, 5급지 같은 데는 자기 개인 주차장을 다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상주차, 거주자우선주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없으리라고 봐요. 하지만 1급지라든가 3급지 같은 경우는 상가로 밀집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전무합니다. 없어요. 없어 가지고 여기는 거주자우선주차를 한다면 가격이 상승해서 많이 쥐도 될 수가 있습니다. 좋다고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평창동에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라는 것이 홍제동 화재사건 이후에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하나의 시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정착이 안되어 가지고 사후 관리에서 단속 문제라든가 견인문제라든가 이것이 지금 사실은 안정화가 되어 있지 않은 입장에 앞으로 안정화가 된다면 신청률이 떨어진 지역도 점차 올라갈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金福同委員** 이러한 문제는 상당히 지혜롭게 잘 생각하셔서 물론 安載弘委員長께서 아주 좋은 제안을 지역주민을 위하는 지역주민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노심초사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계 당국에서 여기에 속한 공무원들께서 정확한 판단과 균형이나 이런 것을 분배해서 잘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弼根** 金福同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하는委員 있음)

玄壽漢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玄壽漢委員** 조례개정안을 내신 安載弘議員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서민의 생활안정비용을 절감시킨다는 목적으로 한 면에 5,000원을 절감하자는데 우리나라 도로가 일본에 비해 굉장히 넓습니

다. 그런데 일본은 차를 사게 되면 그 집 담장을 헐어내고 주차장을 만들어서 차를 삽니다. 일렬로 쪽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 속에 있는 차가 나가려면 뒷차를 빼고 집어넣고 나가고 이러한 교통문화질서를 잘 지키는데 지금 월드컵이다 뭐다 해서 교통질서를 지키자 어찌자 이러한 차제에 저희 동네처럼 주민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이 남았습니다. 어디다 대느냐, 길옆에 댁니다. 우리 구에도 서울시 전체에서도 주차장을 설치하라고 용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용자를 해주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허가율을 보면 금년부터 주차장 대수를 한 집에 한 대씩 하나씩 엄청난 건축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또 주차장을 만들면 뭘합니까? 방이나 세놓기 위해서 전부다 다른 형태로 쓰고 있습니다. 저는 길거리에 내놓고 벌금 몇푼 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일반인의 생각입니다. 종로3가 같은 데 상가지역이 더 합니까마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자꾸 공고를 하고 용자해줄 테니까 담장을 헐어서 주차장을 만들라고 우리 부암동 지역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암반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그 많은 액수를 용자를 안해주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각 구에 거의 비슷합니다. 용자금을 축소했기 때문에 우리 부암동 주민들은 혜택을 못봅니다. 그래서 서민들을 위해서 5,000원을 경감하자 하는 자체가 저는 제안하신 우선 安載弘委員長님이 계시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는가 라고 한번 생각을 주시고

○**安載弘議員**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저는 언제나 제가 의원으로서 생각하는 것은 모든 지방행정은 지역주민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강 국장께서 서울시 일원에 전반적인 동일한 가격이 적용되고 서울시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어떤 서울시의 눈밖에 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자치구에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죠. 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은 그 지역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국장의 생각은 나는

관치의 병폐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여지껏 '70년대 군사독재정치 이후에 지금 관료들의 어떤 지시라는 것이 거의 굳어져 가지고 국민들은 거기에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왔어요. 10년 전부터 지방자치 실시되고 있습니다. 왜 지방자치를 하느냐,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에 맞도록 하자고 하는 것이 지방자치입니다. 위원님들은 지방자치를 왜 하십니까? 주민의 부담이나 어떤 의무나 이러한 것을 경감시켜주자고 지방자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조례의 기본적인 뜻은 다른 구와 형평을 맞추거나 균형을 유지하는 것 그것 틀린 말씀 아닙니다. 그러나 의회에 주어진 의회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이익을 돌려줄 수 있고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전체적으로 종로구 행정을 이끌어 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면 우리는 조례를 바꿔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고쳐야 됩니다. 여지껏 '80년대, '90년대를 거치오면서 우리 관료주의 병폐를 봐왔어요. 지방자치를 왜 합니까? 왜 주민을 위해서 운동장을 만들고 주민을 위해서 체육관을 짓습니까? 그 전에는 정부에서 구청에서 모든 것을 그냥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민이 낸 세금에 의해서 건물을 짓고 공무원들 인건비 주고 있어요. 그러면 차량과 관련된 제세공과금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따져보십시오. 자동차 처음 사면 등록세 내야죠. 취득세 내야 됩니다. 보험료 내야죠. 잘못해서 저거 하면 딱지 떼죠. 끌려가면 쫓아가서 6만원 내야죠. 이렇게 자동차와 관련된 생활필수품이 된 자동차에 대해서 제세공과금에 대해서 우리 구가 도로에 금을 그어서 주차비를 받고 있어요. 이거 경감해주자는 겁니다. 예? 봉이 김선달이 물 팔아먹는데 주민들이 도로에 금 긋고서 거주자우선주차제 동의합니다. 그 요금을 낮추자는 겁니다. 제 뜻은 그렇습니다.

**○玄壽漢委員**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安載弘議員**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질의를.

**○玄壽漢委員** 다수의 주민들이 형평에 맞춰야 되

는데 용자를 받아서 주차장을 만들고 또 주차 이런 벌금을 징수해 가지고 특별회계 상당한 금액이 있는데 각 동에 공영주차장을 건립을 하게 해도 지금 땅 매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安載弘議員** 그러니까 그것도 고쳐야 돼요.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위원님!

**○玄壽漢委員** 제 입장에서 지금 월정 4만원에서 5,000원 내리자고 하면 그러면 주간만 3만원을 내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安載弘議員** 그러면 위원님이 수정안을 내세요. 2만원으로 하자고 하시든지.

**○玄壽漢委員** 차라리 이 돈을 걷어서 각 동에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安載弘議員** 지금 공영주차장 만드는 것이 쉽지가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玄壽漢委員**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安載弘議員** 재원이 왜 부족해요? 위원님이

**○玄壽漢委員** 공시지가와 감정가격의 산술기준이

**○安載弘議員** 재원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위원님! 뭐가 문제냐 하면 땅을 매입하는데 감정가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해도 토지주가 안 팔잖아요?

**○委員長代理 吳弼根** 질의를 듣고 답변을 하시고

**○玄壽漢委員** 살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개정해주는 것이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개정해주는 것이 급한 것인데 우선 당장 주민들에게 한 달에 5,000원 경감하자고 다른 데 100% 넘는데 떨어지는 것이 평창동하고 우리 지역뿐입니다. 뒷쪽에 길거리애다 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외국사람들이 뭘 보느냐, **安載弘議員**님! 일요일에 한 번 교회 가지죠? 주차 한 대 천주교에서 한 대 나오면 이쪽 통행은 못합니다. 완전히 시간이 차단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볼 때 이것이 뭐냐, 주차구획선에 차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주차문화를 우리가 계도를 먼저 하고 부담이 된다고 뭐 했을 때는 5,000원이나 만원이라도 경감해줘야죠.

**○安載弘議員** 질문을 해주세요. 위원님!

○玄壽漢委員 그래서 지금 발의하신 安載弘委員님께서 이것은 재 숙고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委員長代理 吳錫根 그것은 토론시간에 해주시고

○玄壽漢委員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모르겠습니까마는 제 질문사항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吳錫根 玄壽漢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다음은 吳錫南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錫南委員 吳錫南委員입니다. 지금 월드컵 때문에 공사가 조금씩 지연되지 않겠습니까? 5월 말부터 6월 말까지 한달 동안은 아마 약간의 제약을 받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공사에 차질이 없으신지 답변해주시시오.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월드컵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가 지연되는 부분은 물론 시를 의식할 것은 아니겠지만 시에서 근본적으로 이런 월드컵하고 관련해서 굴착복구를 5월부터 6월까지는 역제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월드컵이라는 이 사업이 국가적인 사업이고 또 우리 구청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느껴서 그러한 것을 포용하기 위해서 5~6월까지 가능한 굴착복구 이러한 문제는 저희들이 지연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업을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吳錫南委員 별 차질은 없겠네요?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그렇습니다.

○吳錫南委員 월드컵이라고 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으시다니가 천만다행입니다. 요즘은 때가 때이니만큼 지역 현안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吳錫南委員 주차장 요금 문제 때문에 安載弘委員이 지금 발의를 하셨습니다만 이 회의에 앞서서 조례부칙을 보면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부칙 다반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 형평성을 유지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지를 조

정할 수 있다.' 또 4번에도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 형평성을 유지하거나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지역 설정에 따라 50%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5,000원의 요금 인하도 구청장의 생각에 따라서 50%를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오늘 4만원을 3만 5,000원으로 해도 구청장의 뜻에 따라서 감할 수도 있고 다시 올릴 수도 있는 내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安載弘委員님께서 지금 발의하신 것은 3만원에서 3만 5,000원하는 것도 물론 위원님들이 지역 주민의 여건을 봐서는 타당성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조례부칙을 볼 경우에 3만 5,000원이든 4만원이든 간에 오늘 여기에서 통과해도 집행부에 따라서 가격은 조정이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셨는지, 알고 계셨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그리고 安載弘委員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셨는지요?

○安載弘委員 네. 알고 있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옳습니다. 여하튼 간에 부칙에 나와있는 구청장은 50% 범위 내에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제도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5급지에서 4만원이 3만 5,000원 노상주차장이요. 그 부분에 가서 문안수정을 해야 될는지 그 마지막에 와서 문안수정을 해야 될지는 그건 추가적인 법제심사나 법무심사를 통해서 확정이 되겠습니다만 근본적인 오늘의 이 제안은 安載弘委員長님이 여하튼 간의 문안이든지 어떻든지 간에 4만원에서 5,000원을 깎자, 할인을 하자 하는 이런 취지는 제안이 된 겁니다. 그걸 가지고 어디다가 제도적으로 이쪽에 가서 글씨를 써 가지고 표현을 할건지 저쪽에 가서 표현할 건지는 후속적인 문제입니다.

○吳錫南委員 그러니까 구청장의 방침에 따라서 가격은 조정이 될 수 있다고 우리가 봐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4만원을 3만

5,000원으로 해도 우리 위원님으로서의 의정활동에 충분한 보탬이 되고 또 가격조정은 최종적으로 구청장님이 결정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해서 본 위원은 오늘 이것이 安載弘委員님의 발의가 통과해도 사실은 무난한 안건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安載弘委員**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 입법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주민에게 부담이 되는 내용은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50%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은 위임사항이 되는데 의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 분명하게 못을 박을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량권의 범위 안에서 요금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의회에서는 그것을 예를 들어서 3만 5,000원이면 3만 5,000원, 4만원이면 4만원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 이 조례대로 한다면 구청장께서는 얼마든지 요금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금액을 결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설사 구청장이 요금을 조정한다 하더라도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봅니다.

**○吳錦南委員** 내용적으로는 나중에 그렇게 돼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安載弘委員님 발의한 내용이 주간은 3만원, 야간은 2만원, 전일제는 현재 이걸로 봐서는 5만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토달 하루를 따질 때는 5만원인데 그걸 디스카운트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4만원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주·야간을 했을 경우에 4만원이면 야간과 주간에는 그대로 뒤야 되느냐?

**○安載弘委員** 좋은 의견이십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전일을 기준으로 해서 5,000원을 삭감한 것은 그래도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인데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주간에 월 3만원을 받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2만 5,000원으로 조정을 하신다면 토론 시에 수정동의안을 내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吳錦南委員님의

탁월한 그러한 주민을 사랑하는 마음에 새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吳錦南委員** 우리 국장님은요?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지금 결론적으로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란 것은 물론 당연히 집행부인데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하다시피 지방자치법 123조에서 집행부의 동의 절차가 수반된다는 것이 큰 흐름중의 하나인데 구청장의 입장은 어떤 거냐 하는 표명으로서 작년도 구청장 답변요지와 형평성 문제든지 아까 형평성이란 것은 전체적인 형평성 문제하고 관리규정 문제로 독단적으로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분명히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되다가는 의회에서는 이렇게 제안된 것에 대해서 의결을 해주고 집행부에서는 또 그걸 가지고 이러한 문제로 답변을 작년에 했는데 이걸 가지고 또 서로가 공을 그쪽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통과만 해놓는다는 것이 능사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합동으로 협력을 해가지고 합의가 됐을 때 통과를 시켜주셔야지 우리의회는 통과시켰으니까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오 그런다면 작년에도 분명히 구청장님이 답변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도 감안이 돼야 하고 고려가 돼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吳錦南委員** 충분한 뜻은 알아듣겠습니다.委員長님!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토론이 주어진다고 해도 결말이 안 날 것 같습니다. 잠깐 정회해서 위원님들 개개인의 의사를 타진한 다음에 속개를 했으면 합니다.

**○委員長代理 吳翊根**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55分 會議中止)

(12時16分 繼續開議)

**○委員長代行 吳翊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委員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정부담과 직결되는

사안이고 사설주차장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좀더 다양한 여론수렴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금번 회기에서는 토론을 유보코져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요금조정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할 것을 촉구하면서 심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19分 會議中止)

(12時20分 繼續開議)

○委員長 安載弘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3. 都市計劃決定 및 變更決定 意見聽取(案)(鐘路區廳長 提出)

#### 4. 主要懸案業務報告의 件

○委員長 安載弘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4항 주요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黃義振 都市管理局長!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都市管理局長 黃義振 안녕하십니까? 都市管理局長 黃義振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재무건설위원회 安載弘 委員長님! 吳弼根 幹事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고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구 평동 85-15 외 2필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필운동 32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및 용도지역 변경결정, 삼청동 산2-63일대 도시계획시설 및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입니다. 먼저 평동 85-15 외 2필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동 85-15 외 2필지에는 현재 적십자간호전문대학이 '79년 3월부터 운영 중에 있는 곳으로 학교 현황에 맞추어 2,106㎡, 638평을 도시계

획시설로 신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번째 필운동 32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및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운동 32번지 일대 매동초등학교의 학교용지 중 181㎡가 사직근린공원과 중복결정이 되어 있어 건축제한 등으로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황상 학교용지로 활용되고 있는 이 부분을 공원에서 해제하고 대체공원 용지로 사직근린공원과 여건이 동일하고 학교 경계 바깥쪽에 위치한 부분을 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로 변경되는 사직동 1-2 일부 부지는 서울시 용도지역관리지침에 따라 주변이 사직근린공원이므로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공원으로 변경되는 부지는 일반주거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 도시계획(안)을 2002년 4월 28일~5월 11일간 공람·공고하였으며 서울시로부터 대체공원에 대하여 가능한 정형화되도록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서울시교육청과 협의 후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삼청동 산2-63일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공원) 및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청동 산2-63일대는 삼청근린공원으로 '40년 3월 12일 결정되었으나 현재까지 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미집행시설입니다. 이번에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감사원 현 청사부지가 협소하여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접근성이 용이한 현 공원부지인 삼청동 산2-63일대 2,701.2㎡, 819평을 공공청사 부지로 변경 결정하고 인근의 공공청사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을 공원으로 대체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공공청사로 변경되는 삼청동 산2-63일대는 주변이 삼청근린공원으로 서울시용도지역관리지침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별 구분 지정하고 공원으로 변경되는 삼청동 산2-16일대 일반주거지역은 자연

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60%, 용적률 150%까지 가능합니다. 이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2002년 4월 28일~5월 11일간 공람·공고 하였으며 서울시로부터 대체공원과 잔여 공원용지가 도로와 공공청사로 인하여 삼청근린공원과 분리되고 주변지역에 어린이 놀이공간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어린이공원으로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安載弘委員長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성취되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都市計劃決定 및 變更決定 意見聽取(案)**

(鍾路區廳長)

(이상 1건 附錄에 실음)

○都市管理局長 黃義振 이어서 건축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현안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照)

**主要懸案 業務報告**

(都市管理局)

(이상 1건 附錄에 실음)

(○李炯述委員 議席에서 - 회의진행발언 좀 합시다.)

○委員長代理 吳弼根 黃義振 都市管理局長!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신다고요? 하시죠.

○李炯述委員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이 충분히 읽어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에게 유인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대체하고 핵심되는 이러한 부분만 설명하도록 해서 세세한 부분으로 이렇게 시간 끌지 않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십시오.

○委員長代理 吳弼根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한 일괄질의는 서울특별시중로구의회의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丁炳煥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丁炳煥委員 丁炳煥委員입니다. 도시관리국 제안설명서에 평동 85-15 외 2필지는 현재 적십자간호대학에서 '79년부터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원래 638평 대지는 소유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都市管理局長 黃義振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都市計劃課長 李廷花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유토지 2,106㎡ 중에서 0.7㎡만 빼고 전부 적십자간호전문대학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丁炳煥委員 소유는 되어 있어도 학교시설로는 안되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都市計劃課長 李廷花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번에 완전히 학교로 결정해서 학교재산으로 관리하고자 이렇게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丁炳煥委員 학교에서 운영만 하고 있지 학교부지로 이번에 전환을 해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都市計劃課長 李廷花 학교부지로 전환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丁炳煥委員 학교용지로요?

○都市計劃課長 李廷花 학교재산으로

○丁炳煥委員 학교재산으로만 있지 학교용지로 안된 거 아니겠습니까?

○都市計劃課長 李廷花 예, 그렇습니다.

○丁炳煥委員 그래서 이번에 학교용지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죠?

○都市計劃課長 李廷花 예.

○丁炳煥委員 이상 질의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弼根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安載弘 委員長!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載弘委員 우선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 등과 관련된 사항이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연와정사와 관련된 사항이고 하나는 자하빌라와 관련된 사항인데 자하빌라와 관련된 사항은 玄壽漢委員님 지역구입니다마는 제가 그 내용을 제가 좀더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관련 국·과장한테 질문할테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주택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서는 자하빌라 그쪽과 중앙빌라쪽에 안전이행을 명령하는 행정명령을 내린적이 있죠?

○住宅課長 宣圭景 중앙빌라에 내렸고 자하빌라에는 안 내렸습니다.

○安載弘委員 그러면 중앙빌라에 내린 내용의 범위는 부암동사무소에서 올린 내용을 보면 신영동 산 7번지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을 하고 있어요. 신영동 산7번지 일대가 전부다 위험한 것으로 나와있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주택과에서는 중앙빌라쪽에 어떤 안전조치를 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리셨습니까?

○住宅課長 宣圭景 중앙빌라 입주주민들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절개지 부분입니다.

○安載弘委員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원의 근본적인 이유가 중앙빌라가 1동에서 5동까지 있는데 1동과 2동 주민들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3동, 4동, 5동 주민들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수라는 사람이 1동과 2동 뒤쪽을 공사하니까 민원이 야기된 것 맞습니까?

○住宅課長 宣圭景 저희는 1동부터 5동까지 다 위험하다고 봅니다.

○安載弘委員 전부 위험하다고 봐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왜 물어보느냐 하면 1동에서 5동까지 주택과장께서는 위험하다고 본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1동, 2동은 그래도 좀 양호하고 3동, 4동, 5동이 위험하다고 주장하거든요. 차이나는 이유가 뭐니까?

○住宅課長 宣圭景 현재 중앙빌라 뒤의 절개지는 당시에는 안전등급이 C등급이었습니다.

○安載弘委員 그것이 언제죠?

○住宅課長 宣圭景 C등급은 3년 전부터 '99년 이후부터 C등급이죠. 그래서 저희는 구청에서 보낸 것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3동에서 5동 뒤에 가장 핵심적이지만 1동, 2동도 C등급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安載弘委員 그러니까 얘기를 정리하자면 3동, 4동, 5동 뒤에 위험하지만 1동, 2동도 동시에 했으면 좋겠다는 요약하자면 그런 얘기네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장께 묻겠습니다. 도시계획법 관련법에 의하면 토지의 형상을 특히 임야의 경우에는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都市計劃課長 李廷花 일반적으로 그렇죠.

○安載弘委員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자하빌라와 중앙빌라 사이에 전체적으로 길이 120m에 폭 15m의 임야를 훼손하면 형질변경대상지가 아닌가요?

○都市計劃課長 李廷花 저는 형질변경보다는 재해대책법이라든가 이런 타법에 의해서 한 것으로

○安載弘委員 일반론적으로 묻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자하빌라쪽으로 50m하고 중앙빌라 70m 그 다음에 폭 길이 15m는 임야로 있고 경사로 되어 있고 수목이 울창했기 때문에 일반론적으로 보면 형질변경대상지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都市計劃課長 李廷花 제가 사실은 구체적으로 그쪽 업무에 관여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安載弘委員 그러면 녹지과는 그쪽에 도면이 있나요? 도면을 보시고 한번쯤 평가를 해보시죠? 그것을 도시계획과장을 보여주세요. 절개된 부분 사진 없어요? 그것을 보시라구요. 지금 도면을 보시면 임야가 숲으로 이루어지는 경사와 임야가 있는데 토지형질변경행위와 관련된 도시계획조례를 보면 경사도가 21도 이상이거나 임목본수가 51% 이상인 경우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받도록 그렇게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전체적인 측면에서 재난피해시설이라는 것도 형질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면 그 범위가 축소되어야 된다고 생각돼서 우리 도시계획 전문인 이정화 과장님한테 묻고자 합니다. 답변 좀 해주시죠.

○都市計劃課長 李廷花 제가 여기서

○安載弘委員 아리송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대상지가 된다, 안된다

○都市計劃課長 李廷花 안전조치 차원에서 긴급하게 하는 거라면 꼭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安載弘委員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작년에 10월에 허가가 나갔고 지금까지 공사가 지연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긴급한 요청에 해당되었습니까?

○都市計劃課長 李廷花 긴급하게 하다 주민들의 반대로 정지가 된 것이기 때문에 시행 자체는 긴급하게 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安載弘委員 공사가 굉장히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녹지과에서는 적어도 자하빌라쪽에 50m, 폭을 줄여줬어요. 그래서 그쪽에 공사하지 말라고 하는 바람에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녹지과에서는 왜 행정소송에 패소하면서까지 의도적으로 자하빌라 뒤쪽에 50m 허가를 해줬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왜 자하빌라 뒤쪽에 50m를 최초로 허가를 해주고 주민들 민원이 나니까 그러면 왜 50m 부분을 후퇴를 시켰습니까? 그것으로 해서 김수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소송을 제기하게 하고 결국 패소했는데 그렇다면 최초로 여러분들이 제외할 것을 예상했다면 그쪽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주택과장이 보고한 바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재해위험지역이라는 것은 중앙빌라 1동에서 5동까지 사이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3동, 4동, 5동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민의 민원이 있다고 50m를 후퇴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패소했지만 애시당초에 자하빌라 뒤쪽에 50m를 후퇴를 안해줬으면 여러분들 말씀대로 아무런 위험이 없다고 주택과장이 보고했으니가 그렇다면 패소한 사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민의 민원이 날 이유도 없고,

녹지과장한테 물겠습니다. 녹지과장은 왜 50m에서 70m, 15m의 폭을 최초로 허가를 해줬습니까? 어떻게 해서 허가를 해준 것입니까?

○公園綠地課長 俞樂濤 자하빌라쪽도 계속 토사가 장마철이면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하빌라에도 하수구가 여러 번 막힌 적이 있고 골짜기가 있습니다. 골짜기에 여름철만 되면 해마다 물난리는 아니지만 내려와서 하단부위에 피해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계곡을 정비하려면 자하쪽에 토사가 밀리는 것은 방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는 그 당시에 사실 여기까지 다 위험지역으로 계산을 안했고 지금 계곡을 정비하고 위쪽에 토사가 계속 해마다 밀려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토사는 아니지만 배수구가 막히고 그러니까 이번에 정비를 하려면 이 계곡정비를 좀 어느 정도 완벽하게 하고 또 중앙빌라쪽도 보니까 정비를 하려면 인력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간격이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에는 어차피 토사 밀리는 것을 방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양쪽에 균형을 맞춰서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민들 지금 와서는 다른 토지형질변경을 하는데 저희는 당초에 토지형질변경을 하는 신청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토지형질변경이라는 표현을 절대 쓰지 않았습니니다. 토지형질변경이 아니다. 재해위험

○安載弘委員 왜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公園綠地課長 俞樂濤 토지형질변경으로 들어오면 지목이 바뀌든지 이러한 애긴데 저희는 토지형질변경을 한마디도 못쓰게 했습니다. 재해위험요소로 부암동장도 재해위험시설로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도 재해위험시설로 재해위험시설 정비 차원에서 어차피 여기가 토사가 밀려내려오고 작년 여름에 압벽이 떨어지니까 최소한 정비를 해야 되겠다

○安載弘委員 주택과장 보고에 의하면 과장님 의견을 총괄적으로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과장님의 자하주택 쪽으로 50m 내주고 중앙빌라쪽으로 70m를 내주고 후면에 15m를 내줬습니다. 주택과장 답변은 실질적으로 위험한 곳으로 주택과에서

작년에 안전진단했습니다. 해서 나온 결과는 지금 김수씨라는 분이 시공하는 방법은 타당하다. 그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저기해서 중앙빌라 뒤쪽으로 지형을 봤을 때 안전조치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의 굴토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금 도면에 나와있는 대로 일차로 4m를 내리고 또 다시 꺾어 가지고 또 다시 사면을 정리하려면 중앙빌라쪽에서 뒤쪽으로 상당한 거리를 절토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재난을 불러일으킬 허가를 내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公園綠地課長 俞樂濤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安載弘委員 안 그래요?

○公園綠地課長 俞樂濤 지금 자하빌라 1동에서 3동까지 돌 하나 떨어지면 막을 방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기를 도면상에 상당히 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절개를 해서 하면 많은 이격은 생기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安載弘委員 그 높이에서 4m를 절토해서 내려가 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절토를 하는데 위험하지 않다는 얘기에요?

○公園綠地課長 俞樂濤 현재 암벽이 떨어져서 중앙빌라쪽도 상당히 가깝습니다. 이것은 최소한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지 이 정도로 절개지가 지금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판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완공된 이후에 과연 이것이 위험하나, 안 위험하나를 그때 가서 판단을 하시는 것도 좋고 지금 1동에서 3동까지가 안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언젠가는 제거를 해야 하고 3동에서 5동까지도 정비를 거기가 더 급하긴 급한 모양인데 장비를 투입할 자리가 없습니다. 어차피 1동에서 3동까지 3동에서 정비를 해가지 않으면 작업 하기는 어렵다는 말입니다.

○安載弘委員 과장님이 정확하게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과장님하고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나 하면 임야는 좌우지간 재난위해시설 방지를 위해서 하든지 뭘 하든지 하는데

자꾸 꺾으면 꺾을수록 그 범위가 늘어나면 재난위험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겁니다. 자연은 수목이 자라오는 그 상태로 두어야지 그 상태로 절개하고 성토해 가지고서는 그 범위가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나 하면 주민들이 판단할 때는 지금 유과장 생각하고 전혀 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얘기나 하면 실질적으로 낙반사고나 블록화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3동, 4동, 5동이라고 주민들 거의가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민원이 났는데 지금 그것은 중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소위 침사지가 있었잖아요.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이 일차로 걸러져 가지고 토사를 침전시켜 가지고 우바물로 해서 건수만 나가도록 그렇게 되는 시설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것도 김수라는 사람이 한 것입니까? 아니죠? 누가 했느냐? 그것은 구청에서 했습니다. 왜 했느냐, 주민들이 위험하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2001년도 7월 15일날 수해 때 토사가 유실돼서 침사지가 막히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허가면적의 범위와 침사지를 절개하고 재난위해시설을 하는 것은 전혀 별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녹지과에서는 이러한 사안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과나 주택과에서 녹지과로 어떤 내용을 보냈을 것이고 녹지과에서는 저 범위 정도의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는 도시계획과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토지형질 변경행위 허가 신청을 하면 토목과 무슨, 지적과 무슨 뭐뭐 해서 협의를 보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녹지과에서는 소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해서 120m 되는 폭과 15m 되는 폭을 도시계획과에 사전 협의 없이 그런 단독 결정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녹지과장께서는 생각하실 때 적어도 자하빌라와 중앙빌라 뒤편이 위험하다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객관

적으로. 그러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녹지를 훼손시키지 않아야죠. 과장 입장에서는 그렇죠? 많은 나무를 심고 조성하는 것이 공원녹지과장 일 아닙니까? 그런데 120m, 15m나 되는 폭을 허가를 해줬어요. 녹지과장이. 전혀 도시계획과장은 알지 못해요. 아까 답변한 거 들으셨죠. 그것에 대해서 어떤 협의를 받은 바 없습니다. 과장은. 그런데 주민은 자하빌라 주민은 50m를 제외시켜 달라고, 중앙빌라는 철회해달라고 하는데 철회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청의 딜레마입니다. 왜? 소송에서 저서.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都市管理局長 黃義振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제가 3월 1일날 발령받아 가지고 가보니까 이미 허가 처리된 상태에서 일부 잘못된 부분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저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되고 그래서 빨리 우기 전에 공사된 구간에 대해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주민들께서 자하빌라 주민들 자치회장하고 중앙빌라 자치회장께서 저희 공원녹지과를 내방해서 우기 전에 빨리 공사를 하되 안전조치를 해달라, 일요일날 공사를 좀 중단해달라 이러한 몇가지 주문을 해서 현재의 공사구간 명령 나간 구간만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安載弘委員 그러면 150m, 15m요?

○都市管理局長 黃義振 그렇죠. 현재

○安載弘委員 자하빌라쪽에 50m, 중앙빌라쪽에 70m를 굴토식 공법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재난 방지시설을 하겠다고

○都市管理局長 黃義振 그것은 원상복구해서 조경을 다시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安載弘委員 문제가 많아요. 국장님! 현명하게 판단하셔야 되는데 지금 주민들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고 해서 행정행위에 패소했다고 해서 주민들이 움츠러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용단을 내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신영동 산 1

번지 소방서 뒤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사건입니까? 잘못된 사건이었지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구청의 행정대집행료 3억 6,000만원인가 들여 가지고 아직 돈도 못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꼴 나요. 왜? 지금 관련 도면에 의하면 말이죠 15m로 굴토해서 경사면을 맞추고 4m로 끝나가려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후퇴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물론 중앙빌라 땅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상당히 많은 지역이 후퇴를 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 절토를 해서 또다시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그냥 놔두는 것만 같지 않다 이겁니다. 따라서 저는 공원녹지과는 적어도 공무원의 직무 범위 내에서 직권남용을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흠결이 있는 행정행위는 취소나 철회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책임을 지고 이 허가는 취소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없이 많은 주민들의 비난과 시위와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할 것입니다. 심사숙고해서 그 대안을 마련하십시오. 이거는 정말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의원을 4년하고 아마 오늘이 이런 기회를 마지막으로 맞는 그런 기회인 것 같습니다. 저는 4년 동안 생활하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어떤 행정행위나 규제는 마땅히 철폐를 해야 하나 그 규제가 부당한 규제이거나 또는 직권의 범위를 일탈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해왔고 그렇게 4년 동안 생활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이 일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원녹지과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직권남용이고 따라서 직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에 대해서는 취소나 철회를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都市管理局長 黃義振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安載弘委員 그거는 왜야 합니다. 아니면 엄청나게 많은 중앙빌라 뒷쪽이 70m 들어가면 엄청난 량의 굴토가 생기는데 땅을 판다는 것은 꼭 칼로 두부를 자르듯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면을 처리

하려면 실질적으로 70m가 되더라도 10m고 5m고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아마 주민의 큰 저항이 있을 것 같아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吳弼根 安載弘 委員長!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네. 吳錦南委員長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錦南委員 吳錦南委員長입니다. 도시계획시설 학교용지하고 공원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의견청취를 보면 사직동 거기 배화전문대쪽에 지금 파랗게 자료는 칠해져 있는데 뒤에는 주황색으로 되어 있고 주황색 부분이 원래 학교담의 밖에 있는 겁니까?

○都市計劃課長 李廷花 그렇습니다.

○吳錦南委員 그게 원래 학교 땅입니까?

○都市計劃課長 李廷花 그렇습니다.

○吳錦南委員 그럼 그 앞의 파란 것은 그것도 학교 담 안에 있는 거구요. 이 파란 건 공원부지로 되어 있었고 이 위에는 1급지 주택지로 되어 있었나요?

○都市計劃課長 李廷花 파란색 부분은 담장 안에 있고 주황색부지는 학교용지인데 바깥에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吳錦南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파란 부분하고 주황색 부분하고 용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걸 바꿔서 배치하는 거죠?

○都市計劃課長 李廷花 네. 그렇습니다.

○吳錦南委員 그러면 파란 부분 앞에 개인주택이 있습니까? 지금 도면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都市計劃課長 李廷花 밑의 담장 바깥으로 조금 낮은 주택이 있습니다.

○吳錦南委員 삼각으로 되어 있는 주택이 있나요?

○都市計劃課長 李廷花 이 삼각 부분에

○吳錦南委員 그것도 공원부지 아닙니까?

○都市計劃課長 李廷花 공원부지 맞습니다.

○吳錦南委員 소유주가 지금 누구입니까?

○都市計劃課長 李廷花 바깥 부분은 개인토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대상이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했습니다.

○吳錦南委員 바로 앞에 있는 그 삼각코너가 맞죠?

○都市計劃課長 李廷花 네.

○吳錦南委員 그런데 그 토지를 매매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도요. 구체적인 것을 저한테 자료를 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都市計劃課長 李廷花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弼根 吳錦南委員長님!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네. 安載弘委員長님! 질의하세요.

○安載弘委員 安載弘委員長입니다. 질의라기보다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 중에 현장을 보지 않고 사진으로 봐서 정확하게 평가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현장을 한번 다녀와 보시고 과연 그러한 공원녹지과의 허가 행위가 소위 李廷花課長이 생각하는 형질변경 대상지가 아니라고 판단한 게 옳은지 그른지를 미래를 위해서라도 한번 현장을 보시고 저한테 회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課長 李廷花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弼根 더 질의하실 委員!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중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委員!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중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

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時10分 散會)

○出席委員 8人

安載弘 吳弼根 吳錦南 玄壽漢  
丁炳煥 劉燦鍾 李炯述 金福同

○出席專門委員

蔣昭秀

○出席關係公務員

財務局長 李炳滿  
都市管理局長 黃義振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財務課長 趙秀完  
地籍課長 徐燦奎  
都市計劃課長 李廷花

[The page contains extremely faint and illegible text, likely bleed-through from the reverse side of the document. The text is too light to transcribe accurately.]